

『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, 조례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재연장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등 조례에 규정된 장학금 지급 기준을 현행화함으로써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의 건실한 운용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근거 신설(안 제3조제4항)
- 기금 존속기한 관련 조문 정비(안 제3조의2)
-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 요건 개정(안 제14조)
- 장학생의 정원 개정(안 제15조)
- 장학금 지급 금액 제한(안 제16조)
-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대(안 제1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장학생 자격 기준 변경 등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,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도비보조금에 상응하는 시비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의 전출 규정을 신설하였음.
- 또한, 장학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액 제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,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장학금 지급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수혜 대상자를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생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였음.
- 다만, 장학금 재원에 도비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어 「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」를 준용함에 따라 구미시 통·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과 일부 상이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장학금 대상자 확정시 타 장학금과 중복 수령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중복·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규정 신설 등 조례 보완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,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